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은 이렇게 개정 되었다

김문갑 사무관(농림부 가축방역과)

1. 서언

동물보호법과 수의사관계는 동물보호단체 만큼이나 긴밀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앞으로 동물과 수의사와의 역할 관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까하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 개정된 배경 그리고 향후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경위

현행 동물보호법은 '88올림픽 전후로 동물보호와 관련한 동물보호단체 등의 비난이 고조됨에 따라 '91년 제정하였으나 학대행위의 금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반감한 상태입니다. 실효성이 있는 법 집행을 위하여 '02.9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동물보호단체에서 개고기 식용금지 명문화, 학대행위의 범위확대 요구 등으로 법개정이 유보되었습니다.

'03.12월 한국동물복지협회 등 6개 동물보호단

체와 법 제정 방향 협의를 거쳐 시급한 사항부터 우선 개정하기로 의견 접근이 됨에 따라 학대행위의 내용 구체화, 법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우리부에 제출함에 따라 동물보호단체의 개정안을 토대로 수의사협회 등 관계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검토 후 반영하여 정부안을 마련, 부처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법제처 심사를 완료 후 2006. 9월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가 임의규정으로 하면 법 실현성이 없다하여 삭제되었습니다.

정부안 이외에 '06. 11월까지 5건의 의원입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됨에 따라 정부안과 의원입법안 5건을 일부 수정하여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여 2006. 11. 29일 농해수위에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대안은 정부안에서 빠졌던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가 도입되고, 중앙정부에서 유기동물 보호조치를 위한 시설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과 처벌규정도 보완하여 벌금을 최고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당시 의원입법안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 관	의원 입법(안)	비 고
농해수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계경 의원의 11명 ('06.4.7) • 이영호 의원의 16명 ('06.4.12) • 심재철 의원의 12명 ('06.8.7) • 이명규 의원의 15명 ('05.10.21) • 공성진 의원의 20명 ('06.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안과 보완적 • 정부안과 보완적 • 정부안과 보완적 • 정부안과 보완적 • 정부안과 다소 이견
보건복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항숙 의원의 16명 ('05.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동물관리법 제정안 -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중복

법사위에서는 동물학대행위중 불확정 개념인 고통을 주는 행위, 굶주림과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때 소유자에게나 시장이나 군수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삭제한 후 '06. 12. 21일 의결하고 본회는 '06. 12. 22 의결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통보 받은 전부개정안을 '07. 1. 16 국무회를 통과하여 '07. 1. 26일 공포 함에 따라 개정안은 '08. 1.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282호)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伴侶)동물의 사육 및 유기(遺棄)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며,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안 주요내용》

가. 동물의 등록제 도입(안 제5조)

- (1) 고의 또는 과실로 버려지는 동물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2) 시·도지사는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3) 동물 및 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안 제6조)

- (1) 반려동물의 관리소홀로 개에 물리거나 개회충증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증가함.
- (2) 동반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 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에서의 사육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3)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로 인수공통질병의 예방 등 공중보건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화(안 제7조)

- (1)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 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 (2)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및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

위 등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3) 금지행위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그 범위도 확대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동물의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마련(안 제8조)

- (1) 동물이 차량으로 운송되는 도중 상해를 입거나 질식사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
- (2) 동물 운송시 적합한 사료의 공급, 상해를 방지하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의 사용 등 운송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 (3) 동물 운송에 따른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보호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안 제14조)

- (1)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2) 윤리위원회의 설치로 무분별한 동물실험의 억제 및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 (안 제19조)

- (1)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감시관과 명예감시관을 지정 또는 위촉하되, 직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3) 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

에 대하여 동물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동물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4) 동물보호감시관제 등의 도입으로 민간전문가 등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되어 동물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안 제25조 및 제26조 신설)

- (1) 동물 학대행위자·소유자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3)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4.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수의사 역할 관계

동물보호업무는 수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어려움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생명체를 진료하고 수의학적 조치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외국에서는 의사보다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열악한 축산산업 그리고 제도적 장치로 인하여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분위기는 여러 곳에서 감지는 되고 있으나 아직 제도

화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다소나마 법제화 한 것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를 위하여 수의사가 해야 할 사항을 제 시험으로서 많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 첫째, 제6조6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등록대상동물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둘째, 제12조의 동물의 수술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셋째, 제13조 관련한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진통·진전·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최소화하고, 실험 후 회복 시에도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넷째, 제14조에 의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수의사 선정
- 다섯째, 동물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는 동물등록제, 적정한 사육·관리, 동물학대 등의 금지,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 보호시설의 설치,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과 준수사항, 교육 등에서 많은 역할이 기대됩니다.

5.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방향

정부는 농림부, 국립과학수의과학검역원, 축산연구소 등을 「동물보호·복지 T/F팀」을 구성하여 금년도말 까지 동물보호복지종합대책과 병행하여 의원별 입법안의 기본취지와 의원별 지적사항

등을 기초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과정 및 법안발의단계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각종 이해관계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사항을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주요내용》

- 기타 동물의 정의,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민간단체 정의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동물보호시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동물보호감시관의 자격, 임무, 위촉 및 직무범위 등

《시행규칙 주요내용》

- 동물의 등록방법 및 등록사항 등
 -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 동반시 조치사항
 - 동물학대행위 중 수의학적 처치 등 정당한 사유
 -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절차
 -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 ※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고시·규정·지침 등 마련
- ※ 지방자치단체 조례 표준안 마련

6. 맺는 말

앞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 과정에서 대한수의사협회와 수의사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며 많은 조언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